

# 子部 分類에 관한 研究

玄 英 娥\*

## <目 次>

- |                           |                                           |
|---------------------------|-------------------------------------------|
| 緒 言                       | 7. 術數類와 經部의 四書六經의 緯書                      |
| I. 子部의 展開過程               | 8. 藝術類의 書畫之屬과 史部 目錄類의 金石之屬 및 經部 小學類의 字書之屬 |
| II. 子部 類·屬의 分類限界          | 9. 譜錄類와 雜家類 雜品之屬, 史部系譜類 및 藝術類 篆刻之屬        |
| 1. 儒家類와 經部의 四書六經          | 10. 雜家類와 關聯된 諸分類                          |
| 2. 兵家類와 史部의 政書類의 軍政之屬     | 11. 類書類와 雜家類의 雜纂之屬                        |
| 3. 法家類와 史部의 政書類의 通制및 法令之屬 | 12. 小說家類와 近代小說類                           |
| 4. 農家類와 史部의 時令類           | 結 言                                       |
| 5. 醫家類와 房中및 神仙類           |                                           |
| 6. 天文算法類와 術數類의 占候之屬       |                                           |

## 緒 言

學問의 분류에 있어 東·西洋에는 자기 여러 分類法이 創案되어 發展되어 왔으며, 이들은 모두 文獻의 신속하고도 정확한 검색과 함께 최대한의 利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警言을 要치 않는다. 이들 분류법 중 東洋 특히 우리나라의 傳統的인 資料에 대한 分類는 다른 어떤 分類法보다도 四部分類法이 가장 적합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四部分類法은 계속 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研究는 이들 資料에 對한 效率의 인 이용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重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도서관의 司書로 하여금 東洋 및 우리나라의 傳統的인 資料에 대한 分類와 그에 관한 知識 및 文獻奉仕에 대한 能力을 갖추게 하기

\* 成均館大學校圖書館學科 講師

위해서는 四部分類法에 대한 理解가 우선 앞서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研究는 四部分類法 중에서 雜多한 項目등으로 가장 복잡한 子部에 대하여 그 淵源과 展開過程을 歷代의 여러 書目에서 살펴 그의 特性을 밝히고 子部와 關聯된 여러 類屬間의 分類限界를 中心으로 考察하기로 한다.

### I. 子部の 展開過程

東洋의 전통 資料에 대한 分類法은 「漢書藝文志」 編纂의 底本이 된 劉歆의 「七略」인 七分法에서부터 비롯된다. 이 分類法에서 子部에 해당되는 것은 諸子略, 兵書略, 術數略, 方技略이다.<sup>1)</sup>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兵家의 著作이 諸子略에서 分離되어 獨立해서 一略으로서 設定된 것이다. 이러한 分류법은 後에 南北朝의 宋 元徽 元年(473) 王儉이 編纂한 「七志」<sup>2)</sup>에서도 채택되었다. 이 역시 七分法으로서 그 內容을 子部에 관련된 것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二曰 諸子志 紀今古諸子 三曰 文翰志紀 詩賦 四曰 軍書志 紀兵書 五曰 陰陽志 紀陰陽圖緯 六曰 術藝志 紀方技 七曰 圖譜志 紀地域及圖書 其道佛附」<sup>3)</sup>

로 되어 있으니 「七志」에서 子部는 그 分類의 체계를 「七略」에서 본따고 兵書를 軍書로, 數術을 陰陽, 方技를 術藝로 改稱하면서 다만 순서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子部에 圖譜志를 新設하여 비로소 圖畫에 관한 것을 分類한 점과 道教와 佛教를 方外의 教로 삼고 附錄한 점이다.

한편 四部分類法(이하 四分法이라 略稱함)의 分類체계는

「魏晉之世 文籍逾廣 皆藏在秘書中外三閣 魏秘書郎鄭默 刪定舊文 時之論者 謂爲朱紫有別 晉領秘書監荀勗 因魏中經 更著新簿 雖分爲十有餘卷 而總以

1) 班固, 「漢書藝文志」(香港: 太平書局, 1963, 影印), 總跋.

2) 長孫無忌 等撰, 「隋書」(二十五史, 第3卷, 台北: 開明書店, 1961, 影印), 卷32 經籍1.

3) 上揭書.

四部 別之」<sup>4)</sup>

라 있듯이 魏의 秘書郎 鄭默이 宮中 藏書를 整理하여 엮은 中經簿를 土臺로  
 풀때 秘書監 荀勗이 更著한 「中經新簿」에서 처음으로 비롯된 것이다. 여기  
 서 子部에 대한 展開過程을 살펴보면 諸子部에 다른 部가 편입되어 합치되  
 니, 즉 「乙部 有古諸子家 近世子家 兵書 兵家 術數」<sup>5)</sup>로서 方技에 대해서  
 는 확실치 않으나 諸子家, 兵書, 兵家, 數術 등을 합하여 乙部로 명칭되었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子部란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四分法으  
 로써 子部가 통합된 것만은 特記할 사항이다. 이러한 子部の 통합은 그 後  
 東晉 初에 著作郎 李充이 惠·懷의 亂으로 흩어진 典籍을 蒐集하여 엮은  
 「晉元帝書目」에서도 볼 수 있다. 즉

「惠懷之亂 其書略盡 江左草創 十不一存 後雖鳩集 淆亂已甚 及著作佐郎 李  
 充始加刪正 因荀勗舊簿四部之法 而換其乙丙之書 沒略家篇之名 總以甲乙  
 爲次」<sup>6)</sup>

라 있음이다. 이에서 보면 앞서 나온 荀勗의 分類法을 그대로 따르되 乙部  
 의 內容과 丙部の 內容을 바꾸어 甲·乙·丙·丁의 순서로 하였으니, 결국  
 丙部가 子部類가 된 것이다. 이로써 비록 子部の 名稱은 아직 사용되지 못  
 했다 할지라도 子部の 순서만은 여기서 비로서 土臺를 잡은 셈이다.

이러한 체계는 그 후 梁의 普通年間(520—526)에 阮孝緒가 撰한 「七錄」에  
 도 영향을 미쳤다. 물론 이는 七分法의 分類이나, 1錄에서 4錄까지의 순서  
 가 經典錄, 紀傳錄, 子兵錄, 文集錄으로서 四分法의 經·史·子·集의 순서  
 로 되어있는 점이다. 이와 함께 이 「七錄」에서 子部에 대한 展開過程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sup>7)</sup>

子兵錄 內篇三

儒部 道部 陰陽部 法部 墨部 縱橫部 雜部 農部 小說部 兵部

術伎錄 內篇五

4) 阮孝緒, 「七錄」(廣弘明集, 第3卷 所收), 序

5) 長孫無忌 等撰, 前揭書, 卷32 經籍1.

6) 阮孝緒, 前揭書, 序.

7) 上揭書.

天文部 緯讖部 曆算部 五行部 卜筮部 雜占部 刑法部 醫經部 經方部  
雜藝部

佛法錄 外篇一

戒律部 禪定部 智慧部 疑似部 論記部

仙道錄 外篇二

經戒部 服餌部 房中部 符圖部

라 있듯이 「七錄」에서는 앞서나온 「七略」과 「七志」를斟酌하였다. 즉 「七志」에서의 軍書志를 兵書로 고쳐 諸子와 합하여 子兵錄으로 設定하였으며 또한 「七略」의 術數略에 方技略의 經方과 醫經을 編入시켜 術伎錄이라 하고, 神仙과 房中을 仙道錄으로 포함시켰다.

그 후 子部の 名稱과 性格이 확립된 것은 「隋書經籍志」에 이르러서이니<sup>8)</sup>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子部

儒 道 法 名 墨 縱橫 雜 農 小說 兵 天文 曆數 五行 醫方

附道經

經戒 服餌 房中 符錄

附佛經

大乘經 小乘經 雜經 雜疑經 大乘律 小乘律 雜律 大乘論 小乘論 雜論 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七錄」에서의 子兵錄을 子部로 고치었으며, 術伎錄가운데 緯讖部는 隋書經籍志의 經部로, 刑法部는 史部로 편입시켰으며, 雜藝部의 刪去를 除外하고 모두 子部에 統合시켰다. 이외에도 五行 卜筮 雜古를 모두 統合하여 五行으로 하였고, 醫經과 經方은 醫方으로 單一化하였으며 曆算部는 曆數로 고치었다. 그러나 七錄에서의 陰陽部는 削除되었다. 이렇듯 子部는 隋書經籍志에 이르러 그 土臺가 確立되었다. 그 후 子部는 舊·新唐書의 經籍志 또는 藝文志에서 藝術類가 마련되어 書畫, 篆刻 및 琴·碁·

8) 長孫無忌 等撰, 前揭書, 卷34 經籍3.

棋類가 포함되었다.<sup>9)</sup> 한편 遂初堂書目에서는 子部에 譜錄類가 追加 설정되어 草木, 鳥獸, 魚虫, 飲食 및 器用이 展開되었고<sup>10)</sup> 四庫全書總目에서는 彙編의 集成類가 雜家에 편입되었다. 이 결과 子部の 內容이 細分되어 清代의 四庫全書總目(이후 四庫全書라 略稱함)에 이르러 總 14種으로 늘어났다.

즉 「可以自爲分者 儒家之外 有兵家 有法家 有農家 有醫家 有天文算法 有術數 有藝術 有譜錄 有雜家 有類書 有小說家 其別數則有釋家 有道家 鉞而次之 凡十四類」<sup>11)</sup>라고 되어있는 바 이것이 바로 清代에 와서 크게 展開된 子部の 內容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傳統의인 分類法에서 子部는 대체로 중국의 것을 그대로 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이 大同小異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나름으로서 資料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분류를 할 수 있도록 설정한 類門이 있으니 그 概要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現存하는 우리나라의 四分法 目錄중 오래된 것은 正祖 5年(1781年)에 편찬한 奎章總目이다. 이는 奎章閣藏書의 總目錄으로서 華本(중국본)을 收錄한 開古觀書目 六卷과 東本(조선본)을 收錄한 西序書目 二卷으로 構成되어 있다. 이 중 우리나라의 서적을 수록한 西序書目的 分類에서 子部를 보면 다음과 같다.<sup>12)</sup> 즉

儒家類	譯語類
天文類	道釋類
曆象類	雜家類
術數類	說家類
農家類	藝玩類
醫家類	類事類
兵家類	

9) 劉昫, 「唐書」(二十五史) 第4卷, 臺北: 開明書店, 1961, 影印), 卷47 經籍志 第27 子部 雜藝術類 鉞.

歐陽修, 「書唐書」, (二十五史, 第5卷, 臺北: 開明書店, 1961, 影印), 卷E9 藝文志 第49 子部 雜藝術類.

10) 姚名達, 「中國目錄學史」(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57), p. 103.

11) 「四庫全書總目提要」(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65) 卷91 子部 總鉞.

12) 李載喆 “韓國書誌目錄學史의 一研究”, 「省谷論叢」, 第7輯, 1976, pp. 580—598.

등으로 展開되어 있다. 여기에서 보면 子部에 있어서 中國의 어느 分類法에서도 볼 수 없는 譯語類를 設定해 놓고 있다. 그리고 이에 淸語, 蒙語, 倭語 등의 諸譯書를 分類하였으니 이것은 우리의 실정을 反映시킨 類門이다. 이러한 類門의 設定은 이후 나오는 우리나라 역대의 書目 分類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와 함께 子部에 속하는 雜纂類를 따로이 四部 末尾에 덧붙인 점 등은 이 西序書目的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도서 分類에 있어서 四分法으로서는 奎章閣藏書의 分類法 다음으로 鏤板考의 分類體系를 들 수 있다. 鏤板考는 正祖 20年(1796年) 正祖의 命에 의하여 편찬된 中央 및 地方의 冊板目錄이다. 이의 子部 分類를 보면<sup>13)</sup> 다음과 같다.

儒家類  
 兵家類  
 天文籌法類  
 醫家類  
 術數類  
     占筮之屬  
     命書之屬  
     陰陽五行之屬  
 雜纂類  
 說家類  
 類書類  
 譯語類  
 道家類  
 釋家類

여기서는 西序書目에서 統合시킨 道釋類가 道家와 釋家類로 兩分되어 독

13) 徐有渠, 「鏤板考」, 洪命憲 校訂(서울:寶蓮閣, 1968, 影印), pp. 77-155.

14) 韓致禧, 「海東釋史」(京城:朝鮮古書刊行會, 1911), 第2卷 pp. 329-446.  
 金錄天, “海東釋史藝文志研究”(未刊行 碩士學位論文, 中央大學校 大學院, 1980), 101p.  
 참고

립되고 있음이 그 차이점이라 하겠다. 特記할 것은 이에서도 譯語類의 설정을 들 수 있으며, 또한 類目 展開에 있어 屬位까지 세분을 시도한 점이다. 즉 類屬에 수록되는 著錄이 한 두 종밖에 되지않더라도 해당 著錄이 있는한 細區分까지 分類를 한 것이다.

四分法の 書目中 그 다음으로는 韓致瀾의 海東釋史 藝文志 經籍을 들 수 있다. 이는 四分法을 채택하고는 있으나, 經·史·子·集의 類目만을 設定했을뿐 더 이상의 細區分은 展開하지 않았다. 그러나 子類에 收錄된 著錄末의 주제를 분석하여 그 체계를 살펴 보면 儒家, 道家, 小說家, 天文, 曆數, 五行, 醫方, 釋家등의 순서대로 배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수록된 著錄의 數가 많지않아 완전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와 시대를 거의 같이하는 四庫全書와 대조해 보면 오히려 隋書經籍志 體制의 영향을 더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즉 隋書經籍志와 本 經籍은 法家類와 兵家類를 제외하면 그 분류 순서가 一致한다. 다만 釋家類를 隋書經籍志에서는 經·史·子·集類의 末尾에 두고 있는데 반하여, 經籍에서는 子部 醫方類뒤에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외에 우리나라에서 現在 적용하고 있는 四分改修法을 보면 1965년에 편찬된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을 들 수 있다. 이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收藏되어 있는 奎章閣圖書 中 韓國人에 의해 著述 作成된 도서의 총목록으로서, 1919年 奎章閣 所藏의 韓國本을 整理한 朝鮮圖書解題에 적용되었던 四分改修法을 많이 따르고 있는데 그 중 子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5)</sup>

儒家	天文
道家	方術
釋家	譯學
兵家	類書
農家	隨錄
醫家	藝術

15) 東亞文化研究所,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65), pp. 513-563.

千惠鳳, 「古書分類目錄法」(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0), 上 p. 45.

## 小說

로 되어 있다. 이것의 특징을 보면 子部에 있어서 一學派를 이루고 있는 諸家의 배열 순서를 종래의 전통적인 方法에 따르지 않고, 主要學派인 儒道釋의 三家를 우선 앞에 두었음을 들 수 있다. 또한 隨錄類라하여 이에 雜家類의 雜說과 같이 隨意錄載한 漫錄 및 日記, 그리고 小說家의 一部에 該當되는 異聞雜錄과 비슷한 性格의 것을 一括하여 分類하였다.<sup>16)</sup> 한편 小說家類를 小說類로 고치어 純粹한 古代小說만을 對象<sup>17)</sup>으로 한 錢 등은 四庫全書의 四分法에 比해 보다 발전된 分類 체계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譯學類를 마련하여 華語, 淸語, 蒙語, 倭語 등의 諸譯書를 한곳에 集中시킨 것은 奎章總目的 西序書目에서부터 비롯한 우리 특유의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외에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을 들 수 있는데, 이는 赤裳山 外史庫本과 各 軍營의 圖書 및 記錄類와 함께 樂善齋에 보관되었던 韓國 小說類, 七宮의 舊藏本, 奉謨堂 및 璿源殿의 舊藏本, 宗廟를 비롯한 英陵, 綏陵, 明陵, 溫陵등의 陵齋室에서 移管된 典禮書등으로 構成된 것이다. 이의 子部分類를 보면 다음과 같다.<sup>18)</sup>

儒家類

道家類

釋家類

兵家類

農家類

農書

時令

醫家類

天文·算法類

天文

算書

16) 朝鮮總督府, 「朝鮮圖書解題」(京城: 朝鮮通信社, 1932), pp. 350—355.

17) 上揭書, pp. 365—367.

18) 文化財管理局 藏書閣,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서울: 探求堂, 1972), pp. 547—625.



術數類

藝術類

總集

書畫

書藝

繪畫

篆刻

音樂

雜技藝

譯學類

隨錄類

雜編類

類書類

天道教類

檀君教類

基督教類

위에서 보듯 東洋의 傳統的인 四部分類法을 토대로 하였지만 특이한 것은 종래 史部의 時令類를 주로 天文과 農家問題를 結付시킨 農家日月의 閭閻風俗關係書임을 감안하여 子部 農家類에 분류하고, 子部の 雜家類 中 隨聞隨錄의 형식인 雜考 雜說 雜品の 諸屬에 속하는 것을 隨錄類로 고친 점이다. 이외에도 子部 雜家類中 雜纂, 雜編의 兩屬을 독립해서 바로 雜纂·編類로 설정하였다. 譯學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諸譯書를 위하여 마련하고, 小說家類는 오늘날의 소설과는 그 성격이 다르나 東洋 古代 小說類의 一種으로 보아 이를 集部 小說類에 함께 분류시키었다.<sup>19)</sup> 이와 같은 특성들을 볼때 藏書閣圖書韓國板總目錄은 재래의 인습적인 분류개념을 고쳐 보다 現代的인 觀點에서 分類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東洋의 전통적인 분류법 즉 四分法에 있어서 특히 子部の 연혁

19) 上揭書, pp. 1345-1348.

과 그 展開過程 및 우리나라에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子部의 성격을 검토해 보면 子部는 一家見의 理論과 主張을 체계있게 表現한 諸子의 著述을 비롯해서, 經·史·集 이외의 모든 著述이 여기에 분류되고 있다. 이를테면 그 가운데는 神奇하고도 怪異한 異聞을 모은 小說類가 있는가 하면 農業, 天文, 曆數, 醫方 등의 實用的인 技術學이 들어 있다. 또 衆人의 秘學인 五行術數가 들어 있으며, 이외에도 事物을 類集한 類書 및 藝術類와 譜錄類까지 잡다하게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子部의 성격을 특징짓는다면 마치 십진분류에 있어서 叢類격에 該當하는 것처럼, 四部의 總藪라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 II. 子部 類屬의 分類限界

### 1. 儒家類와 經部의 四書六經

儒家는 원래 司徒의 官에서부터 비롯되어 人君을 도와 陰陽을 지켜 教化를 밝게 함을 바탕으로 하며, 항상 文이 六經에 있고 仁義에 머물러 堯舜을 根本으로 삼아 따르고 文王과 武王을 밝은 法으로 삼으며, 仲尼를 宗師로 받드는<sup>20)</sup> 東洋哲學의 主流라고 할 수 있다. 또한 儒家經典인 六經이 본뜻에 어긋나고 儒學이 점차로 기울어져 가는 것을 막고져 儒學의 學說을 重要시 여기는 것이라 했으니,<sup>21)</sup> 儒家類는 仁義를 근본으로 삼는 儒家의 여러 學說이 該當되는 것이다. 이러한 儒家의 學說은 後世로 내려오며 따라 여러 分派가 생겼다. 그 중 주요한 學派로서는 經學派, 朱子學派, 陽明學派, 考證學派 등이 있으며 이들 學派의 著述이 儒家類에 分類된다. 이를테면 孔子家語, 近思錄, 荀子, 擊蒙要訣, 古鏡重磨方, 朱子書要, 讀朱隨筆, 家範, 思辨錄輯要 등이 이에 속하는 것이다.

六經 즉 易, 書, 詩, 禮, 樂, 春秋와 같이 仁·義·禮·智·信의 五常에 관한 基本學과 四書 즉 大學, 中庸, 論語, 孟子등과 같이 그 學問을 理論的으로 더욱 심오하게 한 儒家經典 그리고 그 註釋書는 經部에 해당된다.

20) 班固, 前揭書, 諸子略 儒家 後敘.

21) 上揭書.

이와같이 儒家의 諸學說과 儒家經典은 傳統的인 四部法에 있어서 確然하게 區分하고 있기 때문에 그 分類限界를 분명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四書六經을 기초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儒家의 學問的인 觀點에서 衍義한 것 이라면 朱子學的인 觀點에서 크게 釋義한 大學衍義 中庸衍義 따위는 子部 儒家類에 分類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2. 兵家類와 史部の 政書類 軍政之屬

兵家は 司馬之職으로부터 비롯되어 王官의 武備로서 나라를 바르게 지키는 兵의 重要性을 밝혀<sup>22)</sup>, 兵技, 兵術 및 兵法에 관하여 論하는 것이지만 그 基本은 法的인 문제가 강한 것이다.

兵家の 基本 思想은 현종의 孫子에서 五事로서 記述되고 있는데 첫째는 道義에 符合해야 하는 것, 둘째는 하늘의 때를 따를 것, 세째는 地의 利로움을 따를 것, 네째는 優秀한 將軍을 얻을 것, 다섯째는 嚴正한 組織과 規律를 가질 것 등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써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한편 兵書에는

「案軍伍戰陳之事 多備於子部兵家中 此所錄者 皆養兵之制 非用兵之制也」<sup>23)</sup>라 한 바와 같이 用兵의 제도와 養兵의 제도를 다룬 것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으니 이들의 分類限界가 提된다.

用兵之制는 나라를 온전히 함을 上으로 삼고, 他國을 擊破함은 이에 다음가며, 또한 軍士를 온전히 함을 上으로 삼고, 남의 軍士를 擊破함은 이에 다음간다고 여기며, 百戰百勝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며 싸우지 않고서도 남의 軍士를 屈服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는 用兵의 法을 論한 것이다. 그 외에도 奇妙하게 兵을 運用하고 戰略을 세워 攻守戰에서 必勝하는 戰法으로서 權謀術, 形勢 및 陰陽을 兼用하며 兵器의 操作과 訓練을 거듭하는 兵術을 포함하게 된다.<sup>24)</sup> 그러므로 古代의 兵家書와 後代의 著述인 兵法 또는 武術

22) 上揭書, 兵書略 兵家 條.

23) 「四庫全書總目錄提要」, 卷82 史部38 政書類 軍政之屬 後條.

24) 班固, 前揭書, 兵書略 및 四庫全書總目提要, 卷99 子部9 兵家類 條.

「其最古者 當以孫子吳子司馬法爲本 大抵生聚訓練之術 權謀運用之宜而已 今所採錄 性以論兵爲主」

및 武器에 관한 것등이 바로 用兵에 관한 제도에 該當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古代 兵法에 관한 것으로서 六韜, 孫子, 吳子, 司馬法, 尉繚子, 黃石公三略, 素書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後代의 著述로서는 우리나라의 壇究捷錄, 東國兵鑑, 武臣須知, 兵家要集, 兵將圖說, 神器秘訣, 歷代兵要, 制勝方略, 陣法, 兵將說, 兵學通, 行軍須知 등을 비롯하여 중국의 百戰奇法, 武經七書, 紀效新書, 武編, 八陣合變圖說, 武備新書, 火器圖, 兵機類纂, 練兵實紀 등을 들 수 있으니, 이들은 모두 用兵에 관한 資料들로서 子部 兵家類에 該當된다.

養兵之制라 함은 歷代 軍政에 관한 것으로서 兵制, 兵馬, 馬政, 軍營, 軍糧, 軍庫藏 등에 관한 것을 말하니, 예를 들면 李朝馬政史, 米捧下冊, 防禦各房重記冊, 鎮營官兵編伍冊殘卷, 歷代兵制, 兵馬考, 軍器邑重記, 本營各庫重記, 訓局事例撮要, 親軍營騰錄, 禁衛營事例 등이 있다. 이러한 資料는 兵에 관계되는 것 중 특히 養兵之制에 속하는 것으로서 史部 政書類 軍政之屬에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 3. 法家類와 史部 政書類의 通制 및 法令之屬

法家類는 理官으로부터 비롯되며 信賞必罰함으로서 禮制를 돕는 것이라 했으니<sup>25)</sup> 古代人의 法理를 私議한 것이다.<sup>26)</sup> 이를테면 管子, 商子, 申字, 鄧析子, 慎子, 韓非子 등의 古代 法家書와 後世人의 著述인 管子權, 韓子迂評, 法家稟集, 刑統賦, 棠陰比事와 같은 資料들을 말하니, 이와같이 古代의 法理를 私議한 諸書가 子部 法家類에 分類된다.

그러나 法에 관계되는 書도

「法令與法家 其事相近 而實不同 法家者私議其理 法令者官著爲令者也」<sup>27)</sup>

라 있듯이 法令이나 法家가 유사하면서도 同一하지 않기 때문에 그 區分을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이다.

法令書는 歷代官署의 律令, 詞訟, 推鞠 및 刑獄에 관한 資料들을 말한

25) 班固, 前揭書, 諸子略 法家 敘.

26) 「四庫全書總目提要」, 卷82, 史部38, 政書類 法令之屬 後敘

27) 上揭書.

다.<sup>28)</sup> 律令은 歷朝에서 적용하였던 法令으로서 刑法과 儀注가 포함되니, 唐律, 大明律, 大清律, 六部律典 및 法規類編등을 예로 들 수 있다.

詞訟과 推鞠은 義禁府에 提訴된 것을 審理하거나, 王旨에 의해 審問한 資料를 말하며 刑獄은 바로 詞訟과 推鞠의 결과 형벌을 집행한 것에 대한 資料이다. 鞠를테면 詞訟類聚, 決訟類聚補, 審理錄, 御定欽恤典則, 欽欽新書, 增修無冤錄, 檢案, 奉教嚴辨錄, 義禁府鞠案, 鞠廳日記, 三省推鞠日記, 供草등을 들 수 있다.

위에서 보듯이 이러한 성격의 法令關係書는 앞서 언급한 法理를 私議한 것과는 그 성격이 判異하므로 史部 政書類 法今之屬에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通制는 古代法典으로 中央 官署 六職의 제도에 관한 法制章典을 말하는 것이니,<sup>29)</sup> 예를들면 우리나라의 礪溪隨錄, 百憲總要, 兩銓便攷, 萬機要覽, 經國大典, 續大典, 大典通編, 大典續錄, 大典會通 및 중국의 漢制考, 七國考, 唐會要, 五代會要, 東漢會要, 明會典欽定大清會典등을 말할 수 있다. 이들은 물론 古代法典이란 觀點에서 法今之屬에 分類할 수도 있겠으나, 특히 經國大典, 續大典, 大典通編, 大典續錄, 大典會通등은 엄격한 의미에서 그 內容이 李朝一代에 걸친 六曹의 制度와 그 章典이므로 이들 자료들은 通制之屬에 분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여튼 이 역시 앞서 언급한 法の理致를 私議한 法家의 書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이는 史部 政書類 通制之屬에 넣어야 할 것이다.

#### 4. 農家類와 史部 時令類

農家를 農稷에서 비롯한다. 百穀을 심고 耕桑을 하여 이로서 衣食을 충족케 하자는 것이 바로 農家의 근본이니,<sup>30)</sup> 이를 위한 生産 기술에 관한 記錄 즉 農業의 方法을 記述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 主業이 農業이지만 그외에도 이에 속하는 副業 즉 養蠶, 牧畜, 狩獵등에 관한 것도 이에 속한다. 이 分類項目을 古來로부터 農桑類로 일컫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곧 農家에

28) 上揭書.

29) 上揭書, 卷81 史部37, 通制之屬 書目.

30) 班固, 前揭書, 諸子略 農家 敘

있어서의 主業과 副業을 함께 가르키는 것이다. 여기에 분류되는 자료로서는 申沄의 農家集成, 李滄遠의 農談, 金恩轍의 增補蠶桑輯要, 徐有架의 種譜譜, 李鍾炫의 農家指南, 鄭秉夏의 養政撮要, 姜希顔의 農花妙方, 李祐珪의 蠶桑攝要, 朴世堂의 增補山林經濟 및 중국의 鮑山の 野菜博錄, 司農司의 農桑輯要, 徐光啓의 農政全書등을 들 수 있다. 요컨대 農家の 主業과 副業에 관계되는 資料가 農家類에 분류된다.

한편 農家와 관련이 깊은 時令類는 종래 史部에 분류되어 왔다. 時令은 季節과 關聯된 農家 日用的 閭閻風俗<sup>31)</sup>, 이를테면 新疆禮俗志, 月令粹編, 歲時廣記, 四時宜忌, 月令輯要, 四時氣候集解, 東國歲時記등과 같이 農家와는 不可分の 關係를 지닌 資料들이다. 그 內容을 風俗의 面으로만 볼 때에는 종래의 四分法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史部의 時令類에 分類하는 것이 妥當하나,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農家와 밀접한 關係가 있는 歲時風俗인 點에서는 農家와 接近시켜두는 것이 主題別로 文獻을 檢索하는 利用者에게 더 편리할 것으로 여겨진다.

##### 5. 醫家類와 房中·神仙類

醫家類는 본서 方技略에서 비롯된 것이다. 方技略은 經方과 醫經 및 神仙과 房中으로 세분되었으나, 그 중 醫經과 經方만이 醫家類에 포함되었다. 그 후 隋書經籍志에서 비로소 子部에 편입되어 醫方이라 命名되었으며, 新唐書藝文志에서는 醫術로, 崇文總目에서는 醫書로 되었다. 그러나 明史藝文志에서는 이 醫書類의 독립類門을 없애고 대신 藝術類에 附屬시켰다. 이 후 四庫全書에서 비로소 다시 子部에 합치되어 醫家類라 명칭하였다.

이의 內容은 원래 血脈과 經絡을 根本으로 하는 診脈으로서 기본을 삼는 기본편인 醫經과 草石의 寒溫을 근본으로 本草綱目的 處方을 하는 應用編 즉 經方이 포함되니,<sup>32)</sup> 결국 오늘날의 漢醫學에 관한 것을 말함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隋書經籍志에서는 長經등 九家를 다스리는 法까지 기재되어 있

31) 「四庫全書總目提要」, 卷67 史部23, 時令類 敘

「後世承流 邇有撰述 大抵農家日用閭閻風俗爲多 與禮經所載小異 然民事即王政也 淺識者 岐視之耳 至於選詞章 隸故實誇多闕廢喪失」

32) 上揭書, 卷91 子部13, 醫家類 敘

으니 여기에 獸醫까지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예로서는 唐의 造父가 撰한 水牛經과 作者未詳의 類方馬經 및 明의 喻仁·喻傑 共撰의 療馬集등을 들 수 있다. 醫家類에 속하는 一般的인 文獻으로는 우리나라의 許浚 撰인 東醫寶鑑을 비롯하여 康命吉 撰인 濟衆新編, 韓秉璉 撰인 醫方新鑑, 李載乾 撰의 坤道要訣, 李獻吉 撰의 麻疹秘方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중국 문헌의 예로서는 張介賓의 景岳全書, 朱震亨 撰의 局方發揮, 翟玉華의 痘科彙篇, 李時珍 撰의 本草綱目, 余觀察 撰의 三指禪, 元孫編의 葉氏醫案存眞, 王清任의 醫林改錯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房中과 神仙은 不老不死를 이룰 수 있는 神仙과 仙人이 될 수 있는 術法을 論한 것이다. 이와같이 不老長生의 方法을 論한 것이라면 醫家類와도 관계가 있겠으나, 이들이 道家類에 편입되어 道藏으로서 道教에 핵심요소가 된 점으로 보면 醫家類보다는 이와같은 資料들은 道藏에 준해서 分類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와 관계되는 자료로서는 延壽第一神言, 廣胎息經, 攝生消息, 神隱志, 香案牘등을 들 수 있다.

#### 6. 天文算法類와 術數類의 占候之屬

天文算法類는 본시 術數略의 天文과 曆譜에서 비롯된 것이다.<sup>33)</sup> 그 후 隋書經籍志에서 子部아래 天文과 曆數로서 분류되었으며, 新唐書藝文志에서는 名稱이 바뀌어 曆算으로 되었다. 崇文總目에서는 天文占書類와 曆數類, 算術類로 나뉘었으며, 直齋堂書目(直齋書錄解題)에서는 子部の 曆象類로 改稱하고 天文과 曆算으로 細分하였다. 文獻通考經籍考, 宋史藝文志에서는 子部에서 天文類와 曆算類로 분류하고, 明史藝文志에서는 天文類와 曆數類로 나누었으며, 四庫全書에서는 이들을 統合하여 天文算法類로 하고 그 아래서 推步와 算書로 細分하였다. 이와같이 歷代 書目에 나타난 天文算法類의 變遷 과정을 살펴보았으나 그 內容들을 概略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물론 이들 古代 資料들을 劃一的으로 區別하기는 어렵지만 推步(天文)는 天體의 軍行을 觀測하여 그 이동에 따라 農事에 미치는 徵候에 관한 것을

33) 班固, 前揭書, 術數略 天文者 및 曆譜者 統.

다른 것이다. 예를들면 何國宗 編의 御製曆象考成과 馬端臨의 歷代象緯考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南秉哲의 推步續解, 崔天璧의 天東象緯考, 李純之 等編의 諸家曆象集, 成周憲 等編의 國朝曆象考 등이 있으니, 이들은 모두 天文一般에 관한 資料들로서 天文算法類 推步(天文)之屬에 분류되는 것이다.

交食推步는 日蝕과 月蝕을 觀測하는 것으로서 이와 함께 또한 推步에 使用되었던 測定儀器에 관한 것들도 역시 天文에 관계 된다. 이러한 자료들은 世宗때 편찬된 交食推步法, 交食通軌, 儀器輯說, 量度儀圖說, 簡平儀說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역시 天文算法類 推步之屬에 分類된다.

曆法은 天體의 週期的 現象을 기준하여 歲時를 定하는 方法인 바, 이와 關係되는 著述도 이에 該當된다. 이를테면 授時曆, 大統曆, 七政算篇, 時憲曆, 千歲曆, 萬歲曆등을 들 수 있으니, 이 모두 曆法과 關係되는 것으로서 推步之屬에 해당되는 것이다.

算書는 古代의 算書를 말하는 것이니 여기에 해당되는 자료로는 孫子算經 九數略, 海鏡細草解, 新編算學啓蒙, 算學正義, 五經算術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天文算法類 算書之屬에 속한다. 이상으로 天文算法類에 해당되는 자료의 성격을 살펴보았으나, 이는 또한 天文에 기반을 두고 있는 術數類 占候之屬과 그 가름을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이다.

占候는 天文을 土臺로 五行思想에 立脚하여 吉凶禍福을 判斷함을 爲主로 한 것을 말한다.<sup>34)</sup> 예로서 靈臺秘苑, 唐開元占經, 通占大象曆星經, 天文秘略, 象緯全書, 星占, 天文書, 海上占候, 天文諸占 및 天文大成管窺輯要등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이 이들 資料는 天文學關係書인 듯하지만 天文을 토대로 占을 친 것으로서 앞서 언급한 天文關係書와는 그 內容이 判異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료들은 術數類 占候之屬에 분류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 7. 術數類와 經部 四書五經의 緯書

術數는 方術이라고도 하며 이를 大別하면 四庫全書에서는 數學, 占候, 相宅相墓, 占卜, 命書相書, 陰陽五行, 雜技術로 細分된다.<sup>35)</sup> 그러나 이는 처

34) 「四庫全書總目提要」, 卷108 子部18, 術數類 占候之屬 後敘

35) 上揭書, 卷108 子部18, 術數類 絃



음 七略의 術數略에서 연유되었으며 그 중 五行과 著龜, 雜占, 形法만이 이에 該當됐던 것이다. 그 후 隋書經籍志에서부터는 모두 합하여 五行으로 되었으며, 崇文總目에서는 子부의 五行類와 卜筮類로 나뉘었다. 그 후 遂初堂書目에서는 子部 數學類아래 形勢, 卜筮, 五行, 陰陽으로 細分되었으며, 直齋書錄에서는 子부의 卜筮類와 形法類로 양분되고, 宋史藝文志에서도 子部아래 五行類와 著龜類만으로 區分되었다. 그러나 그 후 나온 明史藝文志에서는 子部에서 五行類로만 설정되었으며, 四庫全書에서 비로소 7種으로 그 내용이 細分되었던 것이니, 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數學은 萬物이 생기면 반드시 形象이 있고 그 形象이 생기면 반드시 數가 있으니, 이를 乘하고 除해서 推闡하여 天地造化의 근원을 함께 研究하는 것<sup>36)</sup>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一般的인 文獻으로는 揚雄 撰의 太元經, 葉子奇 撰의 太元本旨, 邵子 撰의 皇極經世書, 張行成 撰의 皇極經世索陰, 王湜 撰의 易學, 鮑雲龍 撰의 天原發微, 丁易東 撰의 大衍索隱 등이 있는 바, 이들은 모두 術數類 數學之屬에 넣게 된다.

占候는 앞서 언급한 天文算法類를 참고하기 바란다.

相宅相墓는 風水道識과 관련이 있으니, 이는 즉 地相, 宅相, 墓相<sup>37)</sup>등을 風水地理의 道識思想에 근거하여, 그 吉凶을 가름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地官이 專擔하는 바의 秘學을 가르킨다. 예를들면 漢原陵秘葬經, 葬經, 天機素書, 地理玉函纂要, 天玉經外傳, 地理大典, 地理總括, 發微論, 尙書天地圖說, 催官篇등이 있으니, 이들은 地理道識에 관련된 것으로서 書名에 地理라는 명칭이 붙었어도 術數類에 분류해야 한다.

占卜은 行動한 일에 疑心이 있을때, 卜筮등으로 앞으로의 對策을 決定짓거나 萬事의 善惡과 吉凶에 대한 徵候를 占으로써 判斷해 내는 것이다. 이에 속하는 資料들로서는 河洛眞數, 邵子加一倍法, 靈棋經, 卜法詳考 및 詳註六壬斷經秘訣등을 들 수 있다.

命書相書란 運命을 判斷하는 命書와 面相, 手相, 骨相 및 名相等의 相書

36) 上揭書

「…物生有象 象生有數 乘除推闡 務究造化之源者 是爲數學…」

37) 上揭書, 卷103 子部19, 術數類 相宅相墓之屬 後敘.

類를 말한다. 이 계통의 것으로는 百中經, 範圍數, 相掌金龜卦, 李虛中命書, 玉照定眞經, 三命指迷賦, 星命總括등을 들 수 있다.

陰陽五行은 金水木火土 五行의 相生說과 相剋說로서 人事의 得失을 豫言하는 것이 爲主이다.<sup>38)</sup>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陳子性藏書, 禽遁七元成局書, 五行類應, 通書捷徑, 五行類事占徵驗, 遁甲方直指, 太乙成書 및 協吉通義등을 들 수 있다.

雜技術은 漢書藝文志에서 雜占이라 한것으로서 占夢,<sup>39)</sup> 測字, 錢卜등 雜多한 占이 모두 포함되니, 이에 관한 冊으로는 夢占類考, 紀夢要覽, 龜鑑易影皇極數, 神機相字法, 太素脈法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같이 術數類의 概要를 설명하였거니와 이와 함께 그 分類限界가 문제되는 것은 四書六經의 緯書이다. 이는 經書를 五行思想에 立脚하여 衍義한 것들로서 七錄의 術伎錄에 緯讖部로 있던 것을 隋書經籍志에서 經部에 두었고, 四庫全書에 있어서는 經文外 또는 外傳으로 처리하여 四書六經의 末尾에 각기 設定하였다. 이에 該當되는 자료들로는 河圖, 易河圖數, 尙書緯刑德攷, 詩汎歷樞, 禮斗威儀, 春秋合誠圖, 樂緯動聲儀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易, 書, 詩, 禮, 春秋, 樂등의 緯書로서 術數類와 구분하여 經部에 分類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8. 藝術類 書畫之屬과 史部 目錄類의 金石之屬 및 經部 小學類의 字書之屬

이 藝術類는 舊唐書經籍志에서 丙部子錄에 雜藝術類가 마련된데서 비롯되어<sup>40)</sup> 琴, 碁, 棋類가 보태져 四庫全書에서는 그 內容이 書畫, 篆刻, 琴譜, 雜技로 細分되었으니, 총체적으로 그 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書畫는 四庫全書 子部 藝術類 敍에도 있듯이 書藝와 繪畫를 포함하며 특히 書藝는 鑑賞을 위주로 한 書法이 이에 해당되니,<sup>41)</sup> 法帖이 곧 藝術類로 분류되는 것이다. 한편 書藝家가 아닌 사람이 楷正하게 쓴 寫本은 書藝의 作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책에 담겨진 주제에 따라 該當되는 곳에 분류

38) 上揭書, 術數類 陰陽五行之屬 後敍.

39) 上揭書, 卷111 子部21, 術數類 雜技術之屬 後敍.

40) 劉昫, 前揭書, 卷47 經籍志 第27, 雜藝術.

41) 上揭書, 卷113 子部23, 藝術類 後敍.

하게 된다. 예를 들면 順庵 安鼎福이 베껴쓴 冊은 書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寫本으로서 該當주체에 넣는다. 이상과 같은 書畫之屬의 書藝에 관한 資料로는 古今歷代法帖, 古文韻律抄, 大東書法, 滄江筆書帖, 書品, 法書要錄, 書史, 法書考등을 볼 수 있다.

篆刻은 그 印刻의 體例가 감상의 대상이 되었는데 바 印譜관계서로서 後述되는 譜錄과의 關係를 참조하기 바란다.

琴譜는 雅音으로서 음악에 관한 것이니 원래는 經部의 樂類에 一括 분류되었던 것이나, 俗樂이라 해서 분리시켜 이곳에 마련한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冊으로는 중국의 楊掄所 撰의 琴譜合璧, 程雄 撰의 松風閣琴譜, 朱長文 撰의 琴史, 楊表正 撰의 琴譜大典, 楊掄 撰의 伯牙心法, 胡世安 撰의 操縵錄, 胡文煥의 文會堂琴譜 및 우리나라의 申晟의 琴譜, 魏伯珪의 古琴文을 비롯하여 作者未詳의 俗樂要覽등을 들 수 있다.

雜技는 將棋, 바둑 및 武藝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틀테면 桃花泉碁譜, 受子譜選, 繪圖百局象棋譜, 雙陸譜, 五木經, 射書, 弈史, 壺史, 七玳解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성격의 자료들이 藝術類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중 書畫之屬의 書藝와 史部 目錄類 金石之屬과의 分類限界에 있어서 錯誤가 없어야 할 것이다.

金石은 儒佛道의 石刻類와 그 외 石鼓文에서 비롯한 各種의 碑文과 石甲骨土 塑陶 金屬 竹類등의 祭器, 食器 및 기타 各種의 器物에 새겨진 文字를 指稱하는데, 이를 拓本하거나 그대로 模印한 낱장 또는 그 集成을 말한다. 이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健陵誌, 景陵碑, 景陵誌文, 海東金石苑, 海雲碑銘註, 金冊文, 追上尊號冊文 및 중국의 金石索, 金石華編, 古代銘刻彙攷續編, 殷虛文字外編 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金石과 書藝를 比較하면 書藝는 鑑賞을 목적으로 한 法帖類를 말하며 金石은 拓本하거나 그것을 그대로 模印한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물론 金石이 古考美術과도 관련있음을 생각할 때는 子部에 分類되겠으나 보통 古考學的인 觀點에서 歷史補助學으로 關聯시키므로 史部에 分類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한편 書畫之屬의 書藝와 經部 字書와도 그 가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字書는 字形과 造字에 관한 解說로서 이를테면 隸辨, 六書正譌, 六書通, 字彙, 字通, 字鑑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은 書法에 가르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漢學習得을 위한 資料들로서 書藝와는 엄연히 그 性格이 구별되니, 이들 자료는 經部 小學類에 분류해야 할 것이다.

#### 9. 譜錄類와 雜家類 雜品之屬, 史部 系譜類, 藝術類 篆刻之屬

譜錄類는 尤袤의 遂初堂書目中서 처음으로 譜錄一類가 설정된 以來 各種의 一物을 系統的으로 엮은 著作을 이에 統攝하였으며,<sup>42)</sup> 四庫全書에 있어서도 그 예를 따라 독립 항목으로서 설정되었다.

그러나 各種의 一物을 엮은 것에는

「今於其專明一事一物者 皆別爲譜錄 其雜陳家品者 自洞天清錄以下 竝類聚於此門 蓋既爲古所未有之書 不得不古所未有之例矣」<sup>43)</sup>

라 한 바와 같이 譜錄類와 雜品에 대한 분류한계가 문제되니 우선 譜錄類에 대해 總括的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譜錄은 器物, 食譜, 草木鳥獸虫魚의 系譜를 總稱한 것이니 그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器物은 用器에 관하여 專門的으로 조사하여 系統的으로 엮은 著作으로서, 예를들면 文房四友 또는 그 개개의 筆墨, 紙, 硯등을 엮은것도 包含되니 예컨대 墨法集要, 墨史, 硯箋, 端溪, 硯譜, 硯史, 文房四譜, 古今錢略, 金石識別, 亦政堂重考古玉圖등을 말할 수 있다.

食譜는 가정의 日用 飲食烹飪의 法<sup>44)</sup>을 쓴 것으로서 一品을 專門的으로 研究하여 體系있게 엮은 著作들을 가르킨다. 이를테면 糖霜譜, 酒譜, 煎茶水記, 東溪試茶錄, 品茶要錄, 饌史, 居常飲饌錄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니 이들은 譜錄類 食譜의 屬에 分類하게 된다.

草木鳥獸虫魚는 植物, 動物 中 特定한 一物을 專門的으로 調查 研究하여

42) 尤袤, 「遂初堂書目」(說郛 第10所收本), 子部 譜錄類.

43) 「四庫全書總目提要」, 卷123, 子部 33, 雜家類 雜品之屬 後敘.

44) 上揭書, 卷115 子部25, 譜錄類 食譜之屬.

系統的으로 엮은 著作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分類되는 자료로서는 異魚圖贊補, 蟹譜, 禽經, 菌譜, 竹譜, 金漳蘭譜, 百菊集譜, 范村梅譜, 洛陽牡丹記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各種의 一物을 系統的으로 엮은 것, 즉 어느 主題에도 넣을 수 없는 물건들을 編纂形式에 있어 系統的으로 엮은 것이 바로 譜錄類에 해당된다.

雜品은 衆品 곧 여러가지 事物을 雜多하게 說明<sup>45)</sup>한 것이다. 이를테면 趙希鶴 撰의 洞天清錄, 張應文 撰의 清祕藏, 姜紹書 撰의 韻石齋筆談, 周密 撰의 雲煙過眼錄등을 들 수 있으니 이들 資料들은 雜家類 雜品の 屬에 해당된다.

이와같이 雜品은 여러 事物들을 雜多하게 說明한 것으로서, 一物을 系統的으로 엮은 譜錄類와는 그 性格이 判異함을 알 수 있다.

譜錄類와 史部 系譜類의 가름 또한 언급해야 할 것이다. 譜錄類가 一物을 系統的으로 엮은 著作들을 말하지만, 王家의 系譜나 일반의 族譜 및 姓氏譜와 같이 人物에 對하여 系統的으로 엮은 著作은 譜錄類가 아닌 史部 系譜類에 分類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密陽朴氏世譜, 豊山洪氏族譜, 全氏大同譜, 慶州李氏派譜, 중국의 吳興趙氏世譜, 海陵周氏系譜등의 族譜와 太祖大王宗親錄, 璿源世譜, 國朝譜牒, 列聖王妃世譜등과 같은 王家의 系譜들을 들 수 있다. 그외에 萬姓譜, 姓氏考와 같은 姓氏譜도 또한 해당된다.

譜錄類와 藝術類 篆刻之屬과를 비교해 보면, 篆刻은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印譜관계서로서 그 印刻의 體例가 鑑賞의 對象이 되는 것이다.<sup>46)</sup> 예컨대 趙斗淳 編의 寶蘇堂印存을 비롯하여, 璽寶印本, 朱象賢 編의 印典, 吳世昌 編의 槿城印藪, 何通 撰의 印史 및 顧從德 撰의 印藪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적어 놓은 印章의 形迹들을 系統的으로 엮었다는 點에서 譜錄類를 생각하게 될지 모르나, 그 예술성이 강하여 鑑賞의 對象이 되기 때문에 譜錄類 보다는 藝術類에 넣게 된다.

45) 上揭書, 卷123 子部33, 雜家類 雜品之屬 後跋

46) 上揭書, 卷113 子部23, 藝術類 篆刻之屬 後跋.

## 10. 雜家類와 關聯된 諸分類

雜家が 七略의 諸子略에서부터 비롯되기는 하였으나 細分되기는 直齋書錄解題에서부터이다. 이에서는 겨우 雜鈔, 雜說, 雜考만으로 區分되었으나 四庫全書總目에서 彙編의 集成類가 雜家에 들어왔다.

雜家は 본시 議官에서 비롯하여 儒·墨思想을 겸하고 名·法家の 思想을 합한 學派로 말미암아 그 名稱이 由來된 것이다.<sup>47)</sup> 그러나 後世에 와서 이 雜家の 概念이 폭넓게 類推解釋되어 四庫全書에서는

「雜之義廣 無所不包 班固所謂合儒墨 兼名法也 變而得宜 於例爲善 今從其說 以立說者 謂之雜學 辨證者 謂之雜考 議論而兼敘述者 謂之雜說 旁究物理 臚陳纖瑣者 謂之雜品 類輯舊文 塗兼衆軌者 謂之雜纂 合刻諸書 不名一體者 謂之雜編 凡六類」<sup>48)</sup>

와 같이 雜學, 雜考, 雜說, 雜品, 雜纂, 雜編등의 各種 巨帙까지 分類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雜家類의 概念이 넓고 잡다하므로 이 分類項目의 全般에 걸친 概要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雜學은 學說이 서있는 諸家の 著述을 말하며, 十家書中 墨家, 名家, 縱橫家の 3家書가 量的으로 微微하여 이곳에 統合된 것이다. 즉 墨翟이 始創한 兼愛說을 中心思想으로 한 墨家の 著書를 말하는 것으로서 墨子, 晏子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禮官에서 비롯하여 名分爲主를 주장한 古代 名家의 著書와 行人의 官에서 나온 戰國時代의 合縱連衡學派에 關한 著書 및 議官에서 나와 儒·墨을 兼하고 名·法家の 說을 합한 諸家の 著書도 모두 該當되는 것이니,<sup>49)</sup> 예컨대 慎子, 劉子, 顏氏家訓, 長短經, 昭德新編, 鬼谷子등을 들 수 있다. 처음 이들은 墨, 名, 縱橫家로 따로 독립된 類로 두었으나, 明史藝文志에서부터 이를 雜家類에 편입시켰고, 四庫全書에서는 이를 雜家類 雜學之屬으로 項目을 設定하여 분류하였다. 그러므로 이 雜學之屬은 分類者에 따라 다른 主要 諸子家類와 같이 獨立類門으로 設定하여 分類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47) 班固, 前揭書, 諸子略 雜家者類 後敘.

48) 「四庫全書總目提要」, 卷117 子部27, 雜家類 敘.

49) 上揭書 및 上揭書 卷117 子部27, 雜家類 雜學之屬 後敘.

雜考는 그 說이 經·史·子·集을 包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類에 限定될 수 없는 內容으로서, 본시 議官의 雜家에서 緣되던 彙編이다.<sup>50)</sup> 이를 테면 姚寬 撰의 西溪叢語, 趙昇 撰의 朝野類要, 王應麟 撰의 因學紀聞, 洪邁 撰의 容齋隨筆, 顧炎武 撰의 日知錄, 方以智 撰의 通雅등과 같이 知識全般에 관한 主題를 다룬 것으로서 學問的인 水準이 높기 評價되는 것들이다.

雜說은 그 淵源이 漢의 王充 撰인 論衡에서 비롯되어, 自己의 意見을 開闔하고, 俗語를 訂正하였으며 혹은 近聞한 것을 記述하고 古義를 綜合한 것으로서 後世人들이 筆記하여 遺傳한 說들이다. 대체로 이는 隨意錄載한 것으로 卷帙의 多寡에 制限을 받지 않고 또 編次의 先後도 나누지 않으며, 떠오르는 바에 따라 編을 이룬 것이다.<sup>51)</sup> 예로서는 封演 撰의 封氏聞見記, 羅大經 撰의 鶴林玉露, 龐元英 撰의 文昌雜錄, 董其昌 撰의 畫禪室隨筆, 晁說 撰의 晁氏客語, 陳櫟 撰의 勤有堂隨錄, 陳世隆 撰의 北軒筆記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이 雜說과 앞서 언급한 雜考는 한 주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또한 여러 說을 隨聞隨錄한 것이라는 點에서 후에 나오는 四分改修法 들에서는 보통 이들을 隨錄類라 하여 統合해서 分類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雜品은 앞서 언급한 譜錄類를 참고하고, 雜纂은 後述하게 되는 類書類를 참고하기 바란다.

雜編은 여러사람들의 著作을 그대로 옮겨 合編하고 包括的인 書名을 붙인 이른바 叢書에 해당한다.<sup>52)</sup> 이와 관련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奎章閣叢書, 古典叢書 및 中國의 古今說海, 今獻彙言, 百子全書, 四部備要, 說郛, 涉聞梓舊, 兩京遺編, 藝海珠塵, 漢魏叢書등이 있다.

그외에도 한 個人의 著述全部를 編纂한 것으로 各主題 分野를 包括한 것

50) 上揭書, 卷119 子部29, 雜家類 雜考之屬 後敘.

「其說大抵兼論經史子集 不可限以一類 是真出於議官之雜家也…今彙而編之 命曰雜考」

51) 上揭書, 卷122 子部32, 雜家類 雜說之屬 後敘

「案雜說之源 出於論衡 其說式抒己意 或訂俗語 或述近聞 或綜古義 後人沿波 筆記作爲 大抵隨意錄載 不限卷帙之多寡 不分次第之先後 興之所至 即可成編 故自宋以來 作者至夥 今總彙之爲一類」

52) 上揭書, 卷123 子部33, 雜家類 雜編之屬 後敘

「案古無以數人之書合爲一編 而別題以總名者……左圭百川學海出 始兼裒諸家雜記 至明而卷帙益繁 明史藝文志 無類可歸 附之類書 究非其宜 當人之雜家」

이 또한 이에 포함된다.<sup>53)</sup> 예를들면 우리나라의 與猶堂全集, 靑莊館全書, 栗谷全書, 李忠武公全書등과 中國의 會文正公全集, 章氏叢書, 榕村全集, 漁洋山人集 등을 말할 수 있다. 이와같이 雜編은 여러사람의 著作을 모아 收錄한 叢書 및 한 個人의 著書만을 모아 수록한 全集의 種類라고 性格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近代의 四分改修法에 있어서는 雜編항목을 없애고 叢書·全集類의 分類항목으로 設定하기도 하였다. 이 경우는 雜編類에 該當하는 資料들이 바로 叢書·全集類에 分類된다.

#### 11. 類書類와 雜家類 雜纂之屬

類書의 分類는 荀勗의 中京新簿에서 史書類에 皇覽簿가 收錄된데서 비롯하며,<sup>54)</sup> 隨書經籍志에서 비로소 子部 雜類에 속하게 되었다.

類書類는 四部를 包括하고 있어 四部の 經·史·子·集 어느 類에도 附入시킬 곳이 없어 이에 分類한 것으로서, 다시 말하여 四部全般에 걸친 知識을 收錄한 것과 또는 一事를 專門的으로 다뤄 系統的으로 체계화하여 수록한 것을 말한다.<sup>55)</sup>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우리나라의 李瀛의 星湖僿說, 金摺의 新補彙語, 張混의 兒戲原覽, 李緯의 宙衡, 金宏弼의 寒暄割錄, 李晬光의 芝峯類說, 沈津의 百家類纂, 權文海의 大東韻府群玉등을 들 수 있다. 또한 中國의 것으로는 華希閔의 廣事類賦, 楊慎의 丹鉛總錄, 俞安期的 唐類函, 何煒 등 奉勅撰의 分類字錦, 王應麟의 小學紺珠, 吳襄의 子史精華, 李昉 등 奉勅撰의 太平御覽등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이 類書類는 知識全般을 총망라하여 體系化한 百科事典格인 全書의 性格과 함께 또는 어떠한 일에 대해 계통적으로 엮은 것도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

위에서 類書類의 概要를 說明하였거니와 그 가름을 분명히 해야할 것은

53) 上揭書

「…謂之雜編 其一人之書 合爲總帙 而不可名以一類者 旣無所附麗 亦列之此門」

54) 長孫無忌 等撰, 前揭書.

55) 「四庫全書總目錄」, 卷135 子部45, 類書類 敘

「類事之書 兼收四部 而非經非史非子非集 四部之內 乃無類可歸 皇覽始魏文 晉荀勗中經部 分隸何門 今無所考 隋志載入子部 當有所受之 歷代相承……其專考一事 如同姓名錄之類者 別無可附 舊皆入之類書 亦今仍其例」



雜家類의 雜纂之屬과의 문제이다.

雜纂은

「案以上諸書 皆採摭衆說以成編者 以其源不一 故悉列之雜家……亦皆綴合羣言 然不得其所出矣 故不入此類焉」<sup>56)</sup>

라 있듯이 여러 說을 모아 編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說의 淵源은 一定치 않은 것으로서, 여기저기에서 여러사항을 뽑아 收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黃道吉 編의 經史倫會, 黃胤錫 編의 理蘊新編등을 비롯하여 중국의 吳仕期 編의 古今名喻, 錢學嘉 編의 西政叢書, 沈味蔗 撰의 程式編, 饒堂偶 編의 通天秘書要覽, 陳宏謀 編의 訓俗遺規, 高以孫의 文苑英華鈔등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이 雜纂은 어느 類에도 넣을 수 없이 衆說을 여러곳에서 뽑아 합쳐 수록한 編纂書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類書와 比較할 때 該當되는 知識을 총망라하여 체계화하거나 어떠한 일에 대해 계통적으로 엮은 것은 類書에 속하며, 여러곳에서 雜多한 知識을 뽑아 수록한 요즈음의 編纂書와 같은 성격을 가진 것은 雜纂의 屬에 분류된다고 볼 수 있다.

## 12. 小說家類와 近代小說類

小說家類는

「蓋出於稗官(如淳曰…王者欲知閭巷風俗 故立稗官 使稱說之)…街談巷語 道聽塗說者之所造也」<sup>57)</sup>

라 하였듯이, 王이 閭巷風俗을 알기 위하여 稗官으로 하여금 民間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 내지는 작은 화제들을 記錄케 한데서 淵源된 것인데, 후에는 세상의 風說등을 道聽塗說한 筆記의 性格을 띄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 自體는

「書曰 狂夫之言 聖人擇焉 又曰 詢於芻蕘 是小說之不可廢也」<sup>58)</sup>라 하였듯이

56) 上揭書, 卷123 子部33, 雜家類 雜纂之屬 後敘.

57) 班固, 前揭書, 諸子略 小說家者類 後敘

58) 王堯臣 等編, 「崇文總目」, 錢東垣 等輯釋(國學基本叢書, 第1卷,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68, 縮刷), 子部 小說類 後敘.

본시 王政의 必要에서 嚆矢되었기 때문에 비록 狂夫의 말이라 할지라도 聖人이 擇할 바가 있고 또 불만한 것이 있다하여 史書를 읽는자들이 이를 參考하게 되므로 그 資料가 浩繁해졌다.

이 小說家類는 雜事, 異聞, 瑣語의 三種으로 區分되고 있으니,<sup>59)</sup> 그 內容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雜事는 巷間の 逸話와 사소한 일들을 情理에 사로잡혀 수록한 것을 말한다.<sup>60)</sup> 이의 例로서는 步理客談을 비롯하여 因話錄, 雲仙雜記, 商唐近事, 歸田錄, 東齋記事, 珍席放談등을 들 수 있다. 또한 雜事는 歷代의 政事와 軍事關係를 事實대로 쓴 雜史와도 구별이 되어야 함을 첨언해 둔다.

異聞은 怪異하고 神奇한 內容을 記錄한 것으로서, 神異經, 搜神記, 山海經, 集異記, 太平廣記, 桂苑叢談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瑣語는 巷間の 자질구레한 情談등을 모아 收錄한 것들이니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博物志, 述異記, 酉陽雜俎, 清異錄, 談諧, 樸翁稗說, 古今笑叢, 奇談隨錄, 廣寒樓記등을 들 수 있다.

이상에서 살핀것은 모두 小說家類에 該當된다. 그러나 이들은 唐宋以後 그 作者가 많아져서 그 중에는 거짓을 써서 그 眞髓를 잃게 했는가 하면 또한 失望됨이 많아서 듣는 이로 하여금 懸혹케하는 內容의 것도 적지 않았다.<sup>61)</sup> 이와같이 小說家類는 오늘날의 小說形式과 크게 다르다. 그러므로 이러한 觀點에서는 전통적인 子部에 分類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분류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를 集部類에 넣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즉 四分改修法에서 오늘날의 小說과는 그 形式이 맞지 않으나, 그러나 東洋의 古代小說이 이러한 類에서 衍유되어 現代小說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古今의 것을 모두 한곳에 두려는 圖書館에 있어서는 小說家類를 集部로 옮기고 있다. 이용자를 위해서는 이러한 분류방법이 오히려 바람직할 듯하다.

59) 四庫全書總目錄, 卷140 子部50, 小說家類 跋.

60) 上揭書, 卷140 子部51, 小說家類 雜事之屬 後跋.

61) 上揭書 卷140 子部50, 小說家類 跋.

「唐宋而後 作者彌繁 中間誣誕失真 妖妄熒聽者 固爲不少 然寓勸戒 廣見聞 資考證者 亦錯出其中」

## 結 言

이상 叙述한 바를 要約해 보면 韓中兩國의 四部分類法 중 子部の 展開過程은 다음과 같다. 즉 우선 中國의 경우에 있어서 「七略」은 諸子略, 兵書略, 術數略, 方技略으로 大分되고, 「七志」에서는 圖畫와 道教 및 佛敎에 관한 자료들을 분류할 項目이 新設되었다. 그 후 子部の 內容은 晉의 荀勗이 中經簿를 토대로 엮은 中經新簿에서 비로소 四分法으로서 乙部로 통합되고, 晉元帝書目에서 丙部라 하여 四分法上에서의 제 3의 위치가 정해졌다. 그러나 子部라는 명칭과 그의 성격은 隨書經籍志에 이르러 확립되었고, 그 후 여러 藝文志 또는 經籍志에서 내용들이 增補改編되어 四庫全書에 이르러서는 이의 내용이 14種으로 크게 發展되었다. 이와 아울러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四部分類法 書目인 奎章總目, 鏤板考, 海東釋史藝文志와 四分改修法인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과 藏書閣圖書韓國板總目錄에서의 變遷도 살핀 바, 中國의 歷代書目에서는 볼 수 없는 譯語類의 新設등 우리의 實情을 考慮한 項目이 設定됐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改修法에서는 재래의 傳統의인 分類概念에서 벗어나 現代的 觀點에서 分類됨으로서 子部는 이에서 더욱 더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子部の 性格을 特徵짓는다면, 이에는 諸子의 著述을 비롯해서 農業, 天文曆數, 醫方 등의 實用的인 技術學과 神奇하고도 怪異한 異聞을 모은 小說類가 있는가 하면 五行術數 및 類書類, 藝術類와 譜錄類까지 雜多하게 包含되어 있어 四部の 總藪라 일컬을 수 있다.

諸類屬間의 分類에 있어서는 가장 그 가름이 어려운 儒家類와 經部 四書六經을 비롯하여, 兵家類와 史部 政書類의 軍政之屬, 法家類와 史部 政書類의 通制 및 法令之屬, 農家類와 史部의 時令類, 醫家類와 房中 및 神仙類, 天文算法類와 術數類의 占候之屬, 術數類와 經部 四書六經의 緯書, 藝術類 書畫之屬과 史部 目錄類의 金石之屬 및 經部 小學類의 字書之屬, 譜錄類와 雜家類 雜品之屬 그리고 史部 系譜類 및 藝術類 篆刻之屬, 雜家類와 關聯된 諸分類, 類書類와 雜家類의 雜纂之屬, 小說家類와 近代小說類와의 關係등 12문제를 對象으로 하여 나름대로 그 內容과 差異點을 밝혀두었으니 此正을 바란다.

## A Study on Classification of Miscellaneous Part of Four Category Classification Scheme

Young-Ah Hyun\*

Four Category Classification Scheme(四部分類法), the traditional classification, is the most proper for classifying the traditional oriental materials than some other classifications. Therefore, Four Category Classification Scheme has been valuable until now. It is obvious that this classification aims at a rapid and accurate reference in sorting out the materials and maximum use.

This paper is intended as a study which helps librarians to classify traditional oriental materials. It is also intended to serve librarians to have easy access to ancient literatures which have been filed among various traditional bibliographies for those who are to research oriental materials as an analysis about Miscellaneous Part(子部).

The outline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 (1) Examining closely origins, developing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classification of Miscellaneous Part of Four Category Classification Scheme.
- (2) Explaining the content of division and section of Miscellaneous

---

\* Part time Lecturer, Dept of Library Science, Sung Kyun Kwan University.

Part(子部).

- (3) Coordinating relations of division and section of Miscellaneous Part as well as those of other parts of the classification scheme.
- (4) Clearing up the limitation of classification related to other division.
- (5) Attempting to give basic knowledge on practical classification as concrete examples belonging to each division and section of classification.